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1004호

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 서류 열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1호(2015.07.0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구 도시환경정비 구역) 최초 지정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19-117호(2019.04.04.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-44호(2020.03.19.), 같은 고시 제2023-173호(2023.11.10.) 정비계획(변경) 지정되고 제2020-213호(2020.12.18.), 제2023-51호(2023.04.07.), 제2023-95호(2023.06.16.), 제2023-125호(2023.08.11.), 제2024-35호(2024.03.22.), 제2025-158(2025.10.29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된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,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저촉·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열람)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,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우리 구(용산구 도시계획과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07월 10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열람 기간 : 2026. 7. 10. ~ 2026. 7. 27. (15일 이상)
 2. 열람 장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(용산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)
 3. 사업명 :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
 4. 사업 위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-194 일대
 5. 사업시행자 :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백현일)
 6. 열람 서류 : 열람장소에 비치된 「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」 참조
 7. 의견제출처 :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
- ※ 관계서류는 용산구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(☎ 02-2199-7405)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구의회

훈 령

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무원증 규정
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장 정 호 인

2026년 7월 10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훈령 제51호

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훈령

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와 제3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각각 “인사혁신처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“등록”을 “등록”으로 수정한다.

제9조의 “공무원증 규칙”을 “국가공무원 복무규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공무원증 [] 발급 신청서
[] 재발급

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신 청 인 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	
	성명(한글) (영문)	생년월일	혈액형
	공무원증 번호	전화번호*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 (단, 신청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 함)	

구분	[] 실물 공무원증	[] 발급	[] 재발급
	[] 모바일 공무원증	[] 발급	[] 재발급
신청사유	실물 공무원증	[] 분실 [] 훼손 [] 기타()	
	모바일 공무원증	[] 최초 발급	[]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(스마트폰 분실)
		[] 스마트폰 교체	[]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
		[] 실물 공무원증 재발급 [] 기타 ()	

분실사유	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첨부서류	사진 1매
------	-------

「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무원증 규정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발급·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[] 동의 [] 동의 안 함

신청인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의정팀장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귀하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공무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 등)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(IC)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	제3조(공무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 등) ② ----- ----- 인사혁신처장-----.
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(IC)칩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,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③ -----인사혁신처장-----.
제8조(인장의 등록) 공무원증에 날인하는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	제8조(인장의 등록) 공무원증에 날인하는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제9조(준용 등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「공무원증 규칙」을 준용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	제9조(준용 등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을 준용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·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기관 변경(오기 정정)
- 나. 단순 오기 정정
- 다.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·관리의 근거 마련
- 라. 별지 제2호 서식
 - 모바일 공무원증 부분 추가